

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9. 8. 27.] [법률 제16536호, 2019. 8. 27. 일부개정]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[일부개정]

현재 가축의 소유자,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·검사 등의 권한은 시·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, 그 권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, 보고 및 출입·검사 등의 권한을 갖는 자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◆ 개정문

◎ 법률 제16536호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”을 각각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전단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